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 명, ARS · 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국세청, 2024. 5

- (신고개요)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 26.(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 5. 31.(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이하 "손택스"라 함)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서비스 제공)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해드리며,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입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손택스)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I 상담 시범운영)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합니다.
 -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5. 31.(금)까지

- (신고기간)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금)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7. 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업종별 '23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 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 (안내문 발송) 신고 대상자에게는 4.26.(금)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리며, 모바일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신고안내문 유형별 안내문 발송 일정 |

•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 대상자 : 4. 26.	• 기준경비율 대상자 : 4. 29. ~ 4. 30.
•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 4. 27.	• 모두채움 대상자(납부) : 5. 1. ~ 5. 3.
• 단순경비율 대상자, 비사업자 : 4. 28.	• 모두채움 대상자(환급) : 5. 1. ~ 5. 6.

- (신고방법)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이하 "손택스"라 함)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전용화면이 있으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종료일인 5.31.(금)에는 모든 신고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해드리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 (동영상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 * (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2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

-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총 700만 명의 납세자에게 5. 1.(수)부터 보내드립니다.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도·소매업 등	제조업·음식업 등	임대·서비스업 등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 단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 원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

-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서 연결되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에서도 확인 가능

3 모바일 앱(손택스)으로 더욱 편리하게 신고

- (맞춤형 신고화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AI 상담사를 이번 신고에 시범 운영

- (추진 배경)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활동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부터 AI 상담을 실시합니다.
 - 그동안 5월 신고기간에는 문의가 집중되어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 올해부터는 AI 상담사를 통하여 정규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문상담사 연결은 평일(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가능

- (상담 방법)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여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가 연결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 과거 상담데이터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해드립니다.
 - 다만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별적인 질문이나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은 전문상담사들이 상담합니다.

/ AI상담사 상담 경로 /



- (향후 일정)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AI 상담을 정교화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 등으로 AI 상담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세청이 보유한 세법, 판례, 상담사례 등 다양한 자료의 학습을 통해 납세자의 세부적인 질문에도 원활히 응답할 수 있는 AI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신고·납부

- (신고개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박**	820123-*...	보기	보기	km...	N	신고이동

※ 위택스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①5. 1.~30.은 오전 1시까지, ②5. 31.은 오후 24시까지)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납부방법) 전자신고의 경우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도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세 납부버튼을 눌러 본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세액 조회 후 납부 가능
- (납세편의)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합니다.
 -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임박하도록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리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발굴하여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

-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text{사업소득금액}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text{총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2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 포함 2천4백만원
-----------------	----------------------------	--------------------------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안내

기장의무 판단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원칙 : 직전연도(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옥탕업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 다만, 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옥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⑤ 법(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공동사업장의 경우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text{주업종 수입금액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frac{\text{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text{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times \left(\frac{\text{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text{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right)$$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소령) §201의11⑩)

● 추계신고시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text{산출세액} \times [\text{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금액}] \times 20\%$$

-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22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기장의무 판단

● 간편장부는 무엇인가?

-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장부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21-33호 (2021.07.21.) 「간편장부 고시」)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160조,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옥탕업*1억5천만원 미만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옥탕업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 거래가 발생한 날자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 간편장부 서식

①일자	②계정과목	③거래내용	④거래처	⑤수입(매출)		⑥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⑦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⑧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1.5	매출	○○판매	(주)□□	10,000,000	1,000,000					세계
1.15	상품	○○구입	△△상회			5,000,000	500,000			세계
1.20	접대비	거래처 접대	○○식당			200,000				카드등

- 항목별 기재 요령
- ① 일자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 ② 계정과목 : 거래별로 거래의 성격에 맞는 아래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구분		계정과목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비용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등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

- ③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 ④ 거래처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 ⑤ 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 ⑥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부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 ⑦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설치·제작·건설 포함)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시에는 ⑥번의 기재방법을, 매도 시에는 ⑤번의 기재방법을 준용하여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 란에만 기재합니다.

* 사업용 유·무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⑧ 비고 :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 유형은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기재합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작성요령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가. 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기재합니다.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라”의 신고서와 “나”와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체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업태(업종코드)	간편장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사례			비고
	사업유형	업종	업종코드	
제조업(151101~381007)	과세/일반과세자	스크린인쇄업	(222102)	
건설업(451101~453000)	과세/일반과세자	인테리어	(45210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과세/일반과세자	건설장비운영	(453000)	
도매업(512111~519992)	과세/일반과세자	의류도매	(513121)	
소매업(521001~525912)	과·면세겸업/ 일반과세자	마트	(522071)	
숙박업(551001~551017)	과세/일반과세자	모텔	(55100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음식업(552101~552309)	과세/일반과세자	한식	(552101)	
운수업(601000~641201)	과세/일반과세자	개별화물운송	(602310)	
부동산임대업(701101~701504)	과세/일반과세자	상가임대	(701201)	
교육서비스업(809001~809022)	면세사업자	태권도학원	(80901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22102~922204)	과세/간이과세자	자동차전문수리	(92220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스포츠 및 오락관련서비스업 (924101~924917)	과세/간이과세자	노래방	(924903)	
인적용역(940100~940929)	인적용역사업자	학원강사	(940903)	

※ 주요 작성사례와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을 참조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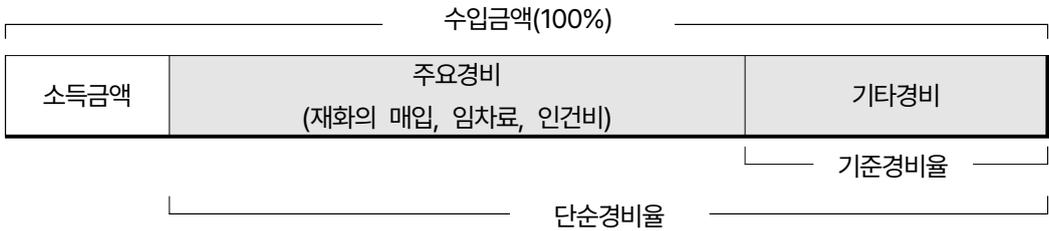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1 경비율제도 의의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하여야 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했더라도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 종전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단계로서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

2 경비율의 이해

-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

3 경비율 적용

-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신규사업자 중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소득령 § 143③,④)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단순경비율 적용금액 미만이고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자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소득령 § 143⑦)



업종별	기준·단순경비를 적용기준금액 (직전연도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해당연도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 '23년 귀속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 3천6백만원을 적용

- 추계결정(경정)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조특법 §128조①)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 §80 ③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 §128①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

4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유의사항

-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소득령 §143⑥, §208⑦)

$$\text{주업종 수입금액} + \text{주업종의 수입금액} \times \frac{\text{주업종 기준금액}}{\text{주업종의 기준금액}}$$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소득령 §208⑤2, §143④2)
-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포함(소득령 §144③)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공동

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를 적용하며(소득세법 § 87③),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소득세법 기본통칙70-0...2③)

-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서면1팁-707, 2006.5.30.)
단, 피상속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5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고(소득세법 § 73④, 소득령 § 137①), 연말정산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가능(소득세법 § 144의2①, 소득령 § 201의11④, 소득칙 § 94의2)

$$\text{연말정산소득금액} = \text{총수입금액} * \text{소득율(1-단순경비율)}$$

구 분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소득율(1-단순경비율)	
		4천만원이하분	4천만원초과분	4천만원이하분	4천만원초과분
보험모집인	940906	77.6%	68.6%	22.4%	31.4%
방문판매원	940908	75.0%	65.0%	25.0%	35.0%
음료품배달원	940907	80.0%	72.0%	20.0%	28.0%

- 연말정산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사업소득을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령 § 201의11⑩)

6 단순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단순소득률의 20%를 가산함
(장애인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 적용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
 $90.3 + (100 - 90.3) \times 20\% = 92.2$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 적용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방문판매원(940908)의 경우
소득금액 : $\{40,000\text{천원} - (40,000\text{천원} \times 75.0\%)\} + \{5,000\text{천원} - (5,000\text{천원} \times 65.0\%)\} = 11,750\text{천원}$

7 기준경비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고
 -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소득령 §143③1호 다목 단서)

* 적용례

건축사업(코드 742105) 운영업자의 2022년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소득세 추계신고시 기타경비는 2022년 기준경비율 21.0%의 1/2인 10,500,000원임.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 또는 추계신고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 §70④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특법 §128②해당 감면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음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 §80③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 §128①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
-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소득상한 배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

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함(소득칙 § 67)

추계소득금액 계산(①, ② 중 적은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배율

귀속 기장의무	2007	2008	2009	2010- 2015	2016- 2019	2020- 2024
간편장부대상자	2.0배	2.1배	2.2배	2.4배	2.6배	2.8배
복식부기의무자	2.4배	2.6배	2.8배	3.0배	3.2배	3.4배

[문] 제조업(단일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2021년도 수입금액이 4억원, 2022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일 때 추계소득금액은?

(장애인이 아닌 임차사업장으로서 기준경비율 : 20%, 단순경비율 : 75%, 배율 3.4배)

주요경비 합계액은 68백만원이며,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가 없다.

• 주요경비 내용 : 매입비용(41백만원), 임차료(12백만원), 인건비(15백만원)

[답] 40,000,000원

[분석 및 소득금액 계산]

- 직전연도(2021년도) 수입금액이 제조업으로서 4억원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기타경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며, 배율은 3.4배를 적용한다.

• 추계소득금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 40,000,000원

① $120,000,000 - 68,000,000 - (120,000,000 \times 20\% \times 1/2) = 40,000,000$

② $\{120,000,000 - (120,000,000 \times 75\%)\} \times 3.4 = 102,000,000$

8 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 · 업체별 · 종목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함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함(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평균적 차이 비율 감안)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 * 계산례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
(11.6 + 0.4 = 12.0)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 * 계산례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 다만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1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410000, 410001), 건설업(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601000~621001, 630301~630302, 630305~630501,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701101~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940100~940929), 기타 개인서비스(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활동(950001)

-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즉, 공동사업자의 분배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함

9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제2021-54호), 2021.9.15.

-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함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참고사항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2.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
3.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4.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

-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함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 ① 음식료 및 숙박료
-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 ⑥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금액(서면1팀-1059, 2005.9.6)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서면1팀-960, 2007.7.6)
 -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함.(소득세과-1405, 2009.09.11)
 -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9호)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54, 2016.01.29.)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참고사항

1.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금·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함(비과세분 포함)
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
3. 사업소득인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주요경비(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서면1팀-88, 2007.1.15)

○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포함하고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음
-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재고매출환산금액에 직전연도 주요경비율(단순율-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할 수 있음

$$\begin{aligned} & \text{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 = \text{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times (\text{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 \quad - \text{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end{aligned}$$

10 주요경비의 증명(소득령§143⑤)

-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등 정규증명서류
 -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
 -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정규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
 -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증빙수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

음

-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의 증명서류
 -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 증명서류 중 정규증빙수취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별지 제40호 서식(1) 제25쪽]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하여야 함.